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용소방대원 형사책임 감면 조항 신설〉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5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1. 29.
3. 회 부 일 : 2024. 12.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을 입었을 때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보조 등의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고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업무 보조 활동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조항 신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임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2(임무 수행에 대한 면책)</u> <u>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임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무 수행에 대한 면책에 관

	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용소방대원이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제2조제1항),

의용소방대의 임무로서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및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제7조)¹⁾.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재난현장 출동과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제2항),

의용소방대원이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0조제1항)²⁾.

한편,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의용소방대 제도를 두고 있음(제2조제4항³⁾).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월 기준 전국 시·도에 의용소방대 3,968개 대(隊)가 설치·운영 중에 있고, 94,717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23년도에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보조 임무에 256,743회 1,213,627명이 활약한 것으로 나타남.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3) 구체적인 조문은 각주 1) 참조

<전국의용소방대 규모 및 활동성과>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68개대 94,717명
(2024.1.1. 기준)

구 분	계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	혼성 의용소방대	지역 ⁴⁾ ·전문 ⁵⁾ ·전담
대수(대)	3,968	1,417	1,305	142	1,104
현원(명)	94,717	36,501	31,249	3,733	23,234

○ 2023년도 활동성과 : 256,743회 1,213,627명 활약

구분	총계	화재		구조· 구급	예방활동 (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화재 진압 보조	재난 활동 보조		화재 예방	행사 안전 지원	생활 안전 지원	홍보 및 기타
횟수 (회)	256,743	6,911	1,981	5,747	86,555	20,117	65,405	70,027
인원 (명)	1,213,627	63,962	8,197	19,901	407,312	86,746	262,162	365,347

(자료: 소방청)

4) 의용소방대의 하위 조직으로 동네별로 있는 119안전센터와 같은 개념임.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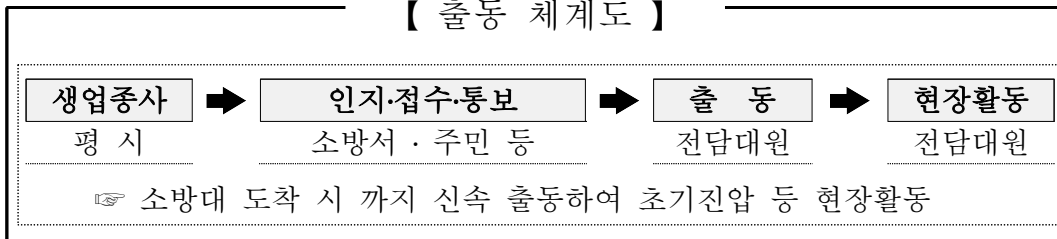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담의용소방대 제도 개요>

- 근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 의의
 -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지역의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소방인력을 보완하는 제도로, 소방력이 미배치되고 소방관서와 거리가 먼 원거리지역 또는 도서지역에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음.
 - 일반적인 의용소방대와 달리, 긴급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함.

【 출동 체계도 】



※ (평시) 생업 종사 ⇒ (재난 시) 인지(SMS 등)후 현장출동 및 활동

- 규모: 198대, 4,667명(2024.1.1. 기준)
- 2023년도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실적

구 분	총 계	화재		구조·구급		민원 출동	
		화재진압	활동보조	구조·구급	활동보조	급배수 지원	생활안전
횟수(회)	3,571	204	953	32	276	18	2,088
인원(명)	17,319	1,560	7,746	217	1,544	110	6,142

(자료: 소방청)

「소방기본법」에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제16조의5)⁶⁾.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의 경우,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 중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의용소방대원의 형사책임 감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다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1월)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업무 보조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이 ① 화재의 경계(儆戒)와 진압업무의 보조임무, ②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중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6)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5.>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의 형사책임 감면요건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소방공무원 형사책임 감면 관련 「소방기본법」의 내용	의용소방대원 형사책임 감면 관련 개정안의 내용
근거	「소방기본법」 제16조의5 ⁷⁾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7조의2
주체	소방공무원이	의용소방대원이
행위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무 수행으로 인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임무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임무
결과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좌 동)
형사책임 감면요건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그 임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7)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

현재 소방관서의 설치는 인구, 면적, 소방 관서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국에 소방청 1개, 소방본부 18개, 소방서 241개 및 하부조직에 해당하는 119안전센터 1,133개, 119구조대 300개, 119구급대 1,447개, 119지역대 393개 등이 설치되어 있음

<전국 소방관서 현황>

(2024. 9. 1.기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119 안전센터	119 구조대	119 구급대	119 지역대
1	18	241	1,133	300	1,447	393

(자료: 소방청)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 지역에 비해 소방관서가 관할하는 지역이 넓고 주민의 거주지가 산재(散在)되어 있어, 배치된 정규 소방력만으로는 화재진압, 구급·구조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자율방재 역할 정착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필요가

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있으므로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업무 보조활동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개정안이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형사책임의 감면은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원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정치운동 금지 등 법률에 따른 각종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⁹⁾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징계와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 등¹⁰⁾ 책임의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기부금 모금 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있기는 하나(제11조) 이

8)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임(헌재 2010헌가80 등).

9)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10)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제79조(징계의 종류), 제80조(징계의 효력), 제84조(정치 운동죄), 제84조의2(벌칙)

에 따른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등 현행 법령 체계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취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가 동원되는 경우¹¹⁾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나 자원봉사자¹²⁾ 등 긴급상황에서 소방업무나 재난관리 업무를 지원·보조하는 사람에게는 형사책임 면책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

11) 「민방위기본법」

제26조(동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② 읍·면·동장은 제32조제1항의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원 명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
 - 1.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⑤ 동원 명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解消)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11월) 의용소방대원의 소방업무 보조 활동으로 인한 형사책임 발생 사례는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소방대원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현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타 민간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51